

1. 의결주문

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
에 관한 부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
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
단체가 지원하는 장기 기증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
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
시행규칙」을 개정하고, 시·도지사가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 등을
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에 대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
포상금 지급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계량
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등 10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
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

제1조(「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1인당 연간 지급되는 건수는 3건을 넘을 수 없다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제2조(「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6제6항 중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”을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10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물류창고업의 경영합

리화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
제4조(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생활물류서비스
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4호 중 “국토교통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
지방자치단체의 장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
개정)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그 밖에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
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가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
·방지 관련 업무

제6조(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장기등 이식에 관
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장기등기증자 및 그
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
정하는 사업

제7조(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
개정)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
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제3항제10호 중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의3제3항제10호 중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”으로 한다.

제8조(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4항 중 “보건복지부장관이”를 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”로 한다.

제9조(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1항제4호 중 “고시하는”을 “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3항 중 “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”를 “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”로 한다.

제10조(「주택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비고: 1. 징역형과 벌금형은 부정행위자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.

2. 위 표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
필요한 경우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8조(포상금 지급기준 등)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으로 <u>한다. 이</u> <u>경우 1인당 연간 지급되는 건수</u> <u>는 3건을 넘을 수 없다.</u> 1.·2. (생 략) ② (생 략)	제48조(포상금 지급기준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하며, 1</u> <u>인당 연간 지급되는 건수는 3건</u> <u>을 넘을 수 없다. 다만, 해당 지</u> <u>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여건을</u> <u>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기준을</u> <u>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</u> <u>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.</u> 1.·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의6(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시설기준 등) ① ~ ⑤ (생략)	제2조의6(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시설기준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사업단의 운영 방법, 운영비의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</u> 이 정한다.	⑥ ----- ----- ----- -----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</u> -----.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3조의10(재정지원 대상사업) 법 제21조의7제5호에서 “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3조의10(재정지원 대상사업) 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5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 원하는 경우로서 물류창고업 의 경영합리화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사항</u>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생활물류 쉼터의 기능 등)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 1. ~ 3. (생략) 4. 그 밖에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<u>국토교통부장관</u> 이 정하는 사항 ②·③ (생략)	제11조(생활물류 쉼터의 기능 등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<u>국토교통부장관</u> 또는 <u>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</u> ----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)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“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·방지 관련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	제5조(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5. <u>그 밖에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가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·방지 관련 업무</u>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6조의2(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) ①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5.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6조의2(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6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</u>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일부개정령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3조의2(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·운영기준 등) ①·② (생략) ③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~ 9. (생략) 10. 그 밖에 <u>보건복지부장관</u> 이 어린이 재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	제13조의2(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·운영기준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. 1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----- <u>보건복지부장관</u> 또는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 ----- -----
제13조의3(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·운영기준 등) ①·② (생략) ③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~ 9. (생략) 10. 그 밖에 <u>보건복지부장관</u> 이 어린이 재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	제13조의3(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·운영기준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. 1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----- <u>보건복지부장관</u> 또는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 ----- -----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3조(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) ① ~ ③ (생략)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활동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<u>보건복지부장관</u> 이 정한다.	제43조(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<u>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</u> 로 -----.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

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의2(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(이하 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”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	제6조의2(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그 밖에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·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·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<u>고시</u> 하는 기관·단체	4.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고시</u> 하거나 <u>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</u> <u>정하는</u> -----
② ~ ⑦ (생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8조(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) ①·② (생략)	제18조(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재활시설의 운영	③ ----- -----

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.</u>	----- <u>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.</u>
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0 - 6753